

간접비 징수 및 관리 지침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간접비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교외연구비 관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 집행에 필요한 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간접비는 교외의 연구비 지원기관으로부터 본교 교직원 등에게 지급되는 학술연구비, 연구용역비 및 각종 지원사업에 관하여 특별히 다른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에 의해 징수 및 관리한다.

제3조(징수율) ① 간접비의 기준 징수율은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의 경우 총연구비의 15%, 기업체 및 기타기관의 경우 총연구비의 20%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정부부처 및 산하기관 등의 지원기관에서 간접비 지원 지침이 별도로 정해진 경우는 이에 따른다.

제4조(관리기관) 간접비는 산학협력단 연구지원팀에서 관리한다.

제5조(사용용도)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한 간접비 사용용도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마일리지적립 및 연구진흥경비) ① 입금된 간접비의 20%를 개인별 마일리지로 적립하고, 적립된 마일리지 범위 내에서 납부한 교원의 연구활동지원금으로 지급한다.

② 연구활동지원금의 범위는 연구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 학술정보용 도서 및 해외전자정보(Web-DB)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를 포함한다.

③ 마일리지 적립 기준일은 2008년 3월 1일로 하고, 적립된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은 적립일(간접비 입금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7조(우수연구소지원) 연구소 활성화를 위하여 연구소 사업계획을 심사하여 우수연구소에 운영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금액은 따로 정한다.

제8조(간접비의 용도 제한) ① 교원 개인이나 학과에 인센티브(수당) 명목의 장려금은 지급하지 않는다.

② 간접비로는 대응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제9조(결산보고) 매년도 회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간접비 수입 및 지출 결산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